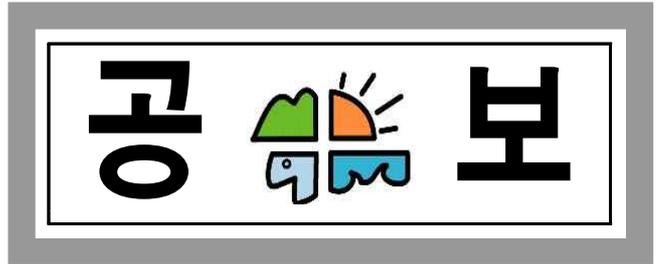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57호 2021년 11월 12일(금)

## 조 례

-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
-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4
- 속초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 7
-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9

## 예 규

- 속초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 22

## 입법예고

-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6
-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2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69호

##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 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 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속초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법 시행 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 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 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 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  
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  
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70호

###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2.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
2. 아동의 안전관련 사업
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
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71호

## 속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속초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동)
2.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 기관
3. 속초시의회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구입실적
2. 우선구매 품목
3.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4.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산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
2.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등

**제8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72호

##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

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제2장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경우 전체위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 한다.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에는 40대 이하가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

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⑪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 진행 시, 참석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⑨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

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중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속초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1월 11일

속초시장 김철수 (직인)

속초시 예규 제615호

### 속초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속초시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속초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 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또는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연번	부서명	주요 직무내용	제한 부동산의 범위
1	관광과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2	문화체육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업무	
3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업무	
4	신성장사업과	철도사업 및 철도연계 지역개발 업무	
5	환경위생과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6	건설도시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하천정비 사업 관련 업무	
7	건축과	주택건설 종합계획, 건축허가 등 관련 업무	
8	공원녹지과	도시공원화, 산지개발 관련 업무	
9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 및 인·허가 업무	
10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11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 직제규정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속 초 시 장

###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도서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휴일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운영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시립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외부 강사료 지급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의 2)
- 나.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을 시립도서관과 동일하게 조정 (안 제7조1항)
  - 매주 화요일 ⇒ 매주 월요일로 변경

다. 대출자료를 연체한 이용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명시(안 제11조)

- 대출자료의 연체된 기간만큼 정지 기간을 구체화

라. 영랑작은도서관 폐관에 따른 명칭란 삭제(안 별표 1 및 별표 3 제2호)

#### 4. 자치법규안 :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1.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도서체육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97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89  
속초시청 도서체육센터 도서관팀

— 연락처 : 전화(033-639-3716), 팩스(033-631-7223),  
전자문서(ksb0128@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서체육센터 도서관팀(☎ 033-639-37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강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 1일과 설·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

제11조 중 “일정기간”을 “연체기간 만큼”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 제2호 중 영랑작은도서관란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7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정기 휴관일</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속초시립도서관 : 매주 월요일</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풀이음작은도서관, 영랑작은도서관 : 매주 화요일</u></p> <p>2.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에 따른 공휴일 중 <u>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u>. 다만, <u>1월1일과 설·추석 연휴 기간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u></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11조(대출정지) 시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 연체,</p>	<p><u>제4조의2(강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7조(휴관) ① ----- -----.</p> <p>1. <u>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u></p> <p>2. <u>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1일과 설·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대출정지) ----- -----</p>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속초시립도서관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89(조양동)	
영랑작은도서관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46(영랑동)	
풀이음작은도서관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6-1(교동)	

[별표 3]

도서관 이용시간(제6조 관련)

2. 작은도서관

구 분	평일	토·일요일
풀이음작은도서관	09:00 ~ 22:00	09:00~18:00 0
영랑작은도서관	09:00 ~ 18:00	

----- 연  
체기간 만큼 -----.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속초시립도서관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89(조양동)	
풀이음작은도서관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6-1(교동)	

[별표 3]

도서관 이용시간(제6조 관련)

2. 작은도서관

구 분	평일	토·일요일
풀이음작은도서관	09:00 ~ 22:00	09:00~18:00

# 관 계 법 령

## □ 도서관법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속 초 시 장

###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2015. 9월 개관한 속초시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난감 대여자를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는 자로 확대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장난감 도서관 목적에 맞게 관련법을 재정비(안 제1조)
- 나. 회원가입 대상을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는 자로 확대(안 제5조제2항 )
- 다. 이용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으로 정함(안 제7조)

라. 장난감 대여 수량 및 기간 등 변동요인이 많은 기준은 규정으로 정함(안 제9조)

- 월 이용횟수에 대하여는 조례에 규정하고, 대여 수량과 기간 등 장난감 물량에 따라 변동되는 요인은 규정으로 정함.

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용시간 조정 및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하여 연말 대청소일을 휴관일에 포함(안 제10조)

- 운영시간 : 9시부터 오후 6시 ⇒ 10시부터 오후 7시 조정
- 연말 대청소일 : 12월 31일

#### 4. 자치법규안 :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1.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도서체육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97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89  
속초시청 도서체육센터 도서관팀
- 연락처 : 전화(033-639-3716), 팩스(033-631-7223),  
전자문서(ksb0128@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서체육센터 도서관팀(☎ 033-639-37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도서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를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 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 영유아 또는 영유아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사실상 보호자 포함)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난감 월 이용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장난감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9시부터 오후 6시”를 “10시부터 오후 7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1월1일과 설·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연말 대청소일 : 12월 31일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9조(대여기간 등) ① (생략)

② 장난감 1회 대여수량은 2점 이내로 하며, 월 이용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1월1일과 설·추석 연휴기간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신설>

3.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9조(대여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난감 월 이용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장난감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시간) ① -----  
----- 10시부터 오후 7시-----  
----- . -----  
-----  
-----  
-----

② -----  
----- .

1. (현행과 같음)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1일과 설·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연말 대청소일 : 12월 31일

4. (현행 제3호와 같음)

## 관 계 법 령

### □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